

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6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3.11.10 시행)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신설(안 제6조의2)
- 나.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등(※ 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8. 21. ~ 9. 11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 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
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
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
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의3(원격영상회의의 운영)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
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
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
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
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1.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
2.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
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
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2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 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3(원격영상회의의 운영)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.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<p>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

관 계 법 령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6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-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·날인해야 한다.
- ⑤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제14조(의견 청취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·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
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
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
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이 승 상